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51호, 2025. 9. 16. 공포, 2026. 9. 17. 시행)됨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규모 및 행위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기준 및 방법(제24조)

- 법 제21조 개정으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내용, 소요비용, 납부 방법, 적정성 재검토 등 규정

나.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및 예외(제24조의 2)

-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준 및 이행보증금 예치의 예외 대상

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제68조의 2)

-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 부과예고서로 알려야 하고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를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기준 및 방법 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을 “예치하여야 하거나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으로 하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원상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하며 제24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장애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2. 원상회복 과정에서 공유수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사항

제24조제2항 중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을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칙으로 하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보증서, 증권 등”을

“보증서, 증권 등(이하“보증수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하고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이 예치된 후 5년마다 이행보증금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5항의 재검토에 따라 변경된 이행보증금을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차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예치하거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금액, 보증수단의 종류 및 재산정 결과 등에 관한 현황을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및 예외) ① 법 제21조제7항단서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규모 및 행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점용·사용허가 면적(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후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총 허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여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큰 영향이 미치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② 법 제21조제8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용·공공

용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4조제5항은 삭제하고 제24조의3(이행보증금의 사용 및 반환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이행보증금의 사용 및 반환 등) ①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이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라 한다)로 알려야 한다.
-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 ⑤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⑥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려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u>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u>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u> 점용·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u>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u> 1.~3. <u><신설></u>	<u>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기준 및 방법)</u>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u>예치하여야 하거나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u> ----- ----- 원상회복계획서 및 <u>원상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u> <u>1.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장애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u> <u>2. 원상회복 과정에서 공유수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u> <u>3. 그 밖에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양수</u>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제출할 서류와 추가되는

산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 -----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

-----.

③ (현행과 같음)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증권 등

⑤ ~ ⑥ <삭제>

④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이하 “보증수단”이라 한다)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이 예치된 후 5년마다 이행보증금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5항의 재검토에 따라 변경된 이행보증금을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제24조의2 <신설>

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차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예치하거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금액, 보증수단의 종류 및 재산정 결과 등에 관한 현황을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및 예외) ① 법 제21조제7항단서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규모 및 행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점용·사용허가 면적(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후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총 허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대해서는 「국

하여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② 법 제21조제8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4조의3(이행보증금의 사용 및 반환 등) ① -----

-----.

② ----- 제1항에 따라 -----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68조의2 <신설>

-----.

③ -----

-----.

제6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이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라 한다)로 알려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를 통지하는 경

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려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u>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u>
--	------------------------------------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8조의2 제1항 관련)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1.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제4호의 행위, 제6호 및 제10호 행위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매립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3.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제8호 및 제9호 행위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4. 법 제8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11호 행위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연 락 처	(051) 773 - 5266